

의안번호	2207696
의 퇴 인	이원택의원
회 답 일	2025.02.16.
추계번호	25C0449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2 (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 시설)	-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음(제1항) 5.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병원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의2 (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 시설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(안 제5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배치 가능 시설에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포함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발생으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－ 개정안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에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을 포함할 경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
 - － 참고로, 2024년 9월 기준으로 배치기관별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음

[표 1] 배치기관별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(2024년 9월 기준)

(단위: 명)

구분	전체	보건(지)소	병원선· 이동진료반	국·공립 병원	국가보건 기관 ¹⁾	응급의료 기관 등 ²⁾	보건단체 복지시설 ³⁾	교정시설 등
전체 (의과, 치과, 한의학)	2,854	2,417	30	183	55	77	4	88
의과	1,206	967	10	104	14	77	3	31

주: 1) 질병관리청, 시·도 역학조사관, 국립검역소,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,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

2) 응급의료취약지역인 시·군 소재 응급의료지정병원

3) 한국한센복지협회(지부), 노숙인 무료진료소 등

자료: 보건복지부

-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 배치될 공중보건의사의 수를 가정해야 하나, 개정안은 이를 시·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- 또한, 최근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2023년 1,106명에서 2024년 716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기존 우선 배치 기관인 보건소·보건지소 등의 공중보건의사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실제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에 배치할 인력을 가정하기 곤란함
 - － 참고로, 공중보건의사의 인건비는 유형(전문의, 인턴, 일반의)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, 2025년 기준 장학생 120명에게 연간 장학금(평균 1,730만원)의 50%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 10억 3,800만원을 배정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